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591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3	김상훈의원	2025.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11.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6. 3. 17.) 상정</li> </ul>
	2213700	안도걸의원	2025.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 2. 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6. 3. 17.) 상정</li> </ul>
	2213734	박수영의원	2025.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 2. 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6. 3. 17.) 상정</li> </ul>

제433회국회(임사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6. 3. 17.)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3회국회(임사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 3. 17.)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함으로써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또한,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 나.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 라.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함(안 제41조제4항).
- 마. 기금이 회사등에 따른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한국수출입은행으로”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41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 및”을 “포함한다),”로,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③·④ (생략)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 5.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

1. (생략)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영 및 처  
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  
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  
다)에 대한 출자·투자나 제1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  
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  
대비용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  
연금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

-----포함한다),-----

-----

-----집합

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른 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

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

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

3. ~ 5. (생략)

③ (생략)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  
-----  
-----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부여할 수 있다.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